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5. 11. 4(화) ~ 11. 17(월), <14일간>

※ 제333회 정례회 기간 : 2025. 11. 3.(월) ~ 12. 23.(화), <51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재난안전실(재난안전기획관, 도로기획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재난안전실(재난안전기획관)

- 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 전파 및 사회재난·폭염·한파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실(도로기획관)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도관리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안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공동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공동탐사·복구에 관한 사항
- 공사장 등 계측관리 및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1) 물순환안전국

-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풍수해 대책, 하천·유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틸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건설기술정책관 및 산하 사업소

(1) 건설기술정책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부실공사 제로 대책 등 건설 혁신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노후 건축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 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 교량 · 치수시설 · 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 ·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 · 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강 동 길	· 수석전문위원 · 의사지원팀장	이상근 조동호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 용 호	· 전문위원	박남권
	더불어민주당	박 칠 성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심현보 권혁일
위 원	국민의힘	김 동 육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정민선 김성연
	"	김 혜 지	· 입법조사관	남기태
	"	남 창 진	· 행정7급	구본장
	"	박 성 연	· 관리운영6급	공혜정
	"	이 은 립	· 정책지원관	민현범
	"	최 민 규	· 정책지원관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봉 양 순	· 정책지원관	송수진
		성 흠 제	· 정책지원관	임진영
			· 정책지원관	임태정
			· 정책지원관	윤희찬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II .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4일(화) 10 : 00	재난안전실	도시 안전건설 위원회 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기획관 ○ 도로기획관 ○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상황관리과 ○ 재난안전예방과 ○ 중대재해예방과 ○ 도로계획과 ○ 도로관리과 ○ 지하안전과 ○ 도로시설과 ○ 교량안전과 ○ 도로사업소(6개)
11월 5일(수) 10 : 00	재난안전실	▶ 현장확인감사	
11월 6일(목)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 안전건설 위원회 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행정과 ○ 재난대응과 ○ 예방과 ○ 안전지원과 ○ 현장대응단 ○ 소방감사담당관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 119 특수구조단 ○ 소방서(25개)
11월 7일(금) 10 : 00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11월 10일(월)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 안전건설 위원회 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감성도시과 ○ 치수안전과 ○ 물재생계획과 ○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술본부 ○ 물재생운영본부
11월 11일(화) 10 : 00	물순환안전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2일(수) 10 : 00	건설기술정책관	도시 안전건설 위원회 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혁신담당관 ○ 지역건축안전센터 ○ 품질시험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부 ○ 토목부 ○ 건축부 ○ 설비부 ○ 방재시설부
11월 13일(목) 10 : 3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4일(금) 10 : 00	종합감사		
11월 17일(월)	감사결과 정리		

III.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계	269	198	26	45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 포함)	85	69	6	10
소방재난본부	70	52	5	1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포함)	42	26	5	1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8	6	1	1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 포함)	27	15	5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37	30	4	3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198건

[재난안전실] — 69건

1.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자치구별 위험구간에 보행자 보호용 차량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L형 측구 열화를 간과한 채 시공하거나 베이스 플레이트 받침부 충진불량 등 시공불량이 나타났는바 하자보수기간에 적의 조치하고 시공지침을 마련할 것.

(남창진 위원)

2.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오전 6시 이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오전 6시 이후 발송하고 있는바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는 새벽 6시 이전에라도 발송토록 할 것.

(남창진 위원)

3. 재난문자 발송이 3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바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정비할 것.

(남창진 위원)

4. 보도상 영업시설물 신규 디자인 교체 시 영세 운영자의 대부분 부담 증가로 교체 신청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바,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자들의 의견수렴을 보다 면밀히 시행하여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남창진 위원)

5. 한강교량 교각·우물통 등 수중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해 자체 개발한 수중점검선·수중우물통 자동청소장비·수중드론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점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6. 한강교량 교각 하부·기초부 세굴 등 취약부에 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세분화하고, 정기·정밀점검 및 진단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정비할 것.

(박성연 위원)

7. 시설관리공단 관리 교량의 경우에도 보수예산 부재로 인해 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강교량 전반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

(박성연 위원)

8. 한강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교각 하부에 야광표시, 신호등, 진행 방향 안내 등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안전정보를 설치하여 탑승객이 교량 하부 통과 시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9. 자치구 보도 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총액계약, 수의계약 등 발주·계약 방식이 자치구·사업별로 과도하게 상이한 실정을 점검하고, 수의계약 적정성 및 법령·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할 것.

(박성연 위원)

10.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기준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강화된 만큼, 집수정·배수관로·펌프 시설의 관경 및 용량을 상향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배수 펌프·방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교체·보강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박성연 위원)

11. 극한호우 시 보행·교통 안전을 위해 경계석 채색스티커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표시를 사전에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

(박성연 위원)

12. 도로보행업무가 교통실과 재난안전실에 분산되어 있어 민원 처리 지연, 예산 중복·누락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재난안전실·교통실 간 중복 제안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성흠제 위원)

1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 램프 공사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공람자료에서 이문동 구간이 누락되었다는 지적과 주민설명·공람 절차가 미흡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바, 해당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람자료 누락 여부를 재점검할 것.

(성흠제 위원, 시민제보사항)

14. 월릉IC 램프 공사구간이 실제로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함에도 동대문구에 사업 내용이 충분히 통보되지 않아 황토길·화장실 조성 등이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한바, 유사사업 추진 시 자치구와의 사전 행정협의·정보공유 절차를 의무화할 것.

(성흠제 위원, 시민제보사항)

15.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바,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것.

(성흠제 위원, 시민제보사항)

16. 40년 이상 운영 되어온 지하도상가의 시설 노후화, 상권 경쟁력 저하, 불법전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연구원 용역 결과를 참고해 보완·재검토하고 지하도상가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7. 재난관리자원 비축과 관련하여, 마스크 등 소모성 물자의 불출·지원으로 재고량이 변동되는 특성을 감안하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 물자의 적정 비축 수준을 상시 유지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8. 폭염·한파 등 재난위기 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안심수당 제도의 실적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재난안전실이 소관부서(건설정책관)와 협의하여 폭염·한파 대책 추진 시 안심수당 제도를 함께 적극 홍보·안내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9.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운찰제 성격의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 다수 업체 참여·페이퍼컴퍼니 양산·동일 현장대리인의 반복 투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재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방안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0. 교량·터널·지하차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이 2021년 이 후 특정 컨소시엄에 의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반복 수행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1. 서울시설공단이 분야별 전문가 확보로 과거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던 교량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사항 미준수 개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단순 지도·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김동욱 위원)

23.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의 위험 행동을 예방·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안내문·표지판 제작, 안전교육 등 서울시 차원의 재정·행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김동욱 위원)

24.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이 2023년 26%, 2024년 46% 수준에 그쳐 사고이월·보류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목표 대비 154% 초과달성 보도자료가 발표된 경위와 산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 자체 추진 구간 포함 여부 및 착공·준공 기준 등 실적 산정 체계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비할 것.

(김동욱 위원)

25. 서울시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작한 우선정비구역도를 비공개 지하시설물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지반특성이 반영된 지하안전지도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

(봉양순 위원)

26.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디자인 공모 및 심의 절차가 길어져 설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그 사이 유사 사고가 재발한 점을 감안하여, 긴급 안전시설 설치 시에는 심미성보다 신속성과 안전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공모·심의·계약 절차를 간소화·단계화하는 등 신속 집행체계를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27. 급경사, 급커브, 비정형 교차로 등 근본적으로 도로 구조 자체에 위험요인이 큰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도로 구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로공학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28. 강동구·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가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신설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치구 제출자료와 위험도, 사고 이력 등을 재검토하여 실제 위험이 높은 구간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기준과 수요조사 절차를 보완할 것.

(봉양순 위원)

29.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직후 자치구에 교부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특별조정교부금(자치구당 약 40억 원) 집행이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전면 보류되고, 이후 서울시 디자인 공모 추진으로 설치가 약 1년 지연된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실제 인명사고가 재차 발생한 만큼, 집행 보류 결정의 경위·근거·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강동길 위원장)

30. 복합재난 발생시 주관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초기인명사고 등 재난상황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할 것.

(최민규 위원)

31.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와 주행구간의 제강슬래그 포장 공사비가 약 7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2024년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흡수율·배수성 등 품질·안전성 우려에 대한 후속 검증계획이나 품질안전성 확보방안 수립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32.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공법 도로포장 시범사업에 대해 성능검사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바,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보수 중심이 아닌 재발 방지 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전환할 것.

(최민규 위원)

33. 솔샘고가 하부공간(정릉동)의 개인 불법 창고 사용에 대해 변상금 부과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바, 장기간 도로 하부공간을 사적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적극 추진할 것.

(이은림 위원)

34. 어린이놀이시설은 재난안전실이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나 실제 현장점검은 대부분 자치구·관리주체에 맡겨져 있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서류·자체점검 외에 일정 주기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도록 할 것.

(이은림 위원)

35.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중대사고 위험이 큰 만큼,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이 정기적인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이은림 위원)

36. 서울시 중요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반복·지속되고 있음에도, 보수 이후 등급 상향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C등급 유지에 그치고 있는바, C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정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최소 1년 수준으로 단축하여 상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는 보수·보강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이은림 위원)

37. 현재 지반침하 현황은 면적 $1m^2$ ·깊이 1m 이상 국토부 보고대상만을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바, 소규모 함몰·동공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자치구에 발생한 동공의 복구공사에 대해 서울시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이은림 위원)

38. 지반침하 원인의 약 60%가 상·하수관로에서 비롯되고, 이 중 상수관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이은림 위원)

39. 상수관 인근에 전력관 등 지하매설물이 법정 이격거리(예: 0.6m)만 겨우 확보된 채 과도하게 근접 매설된 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지하매설물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로 간접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할 것.

(이은림 위원)

40. 서울시는 2024년 7월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기존 5년 주기의 공동조사를 연 1회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밟힌 바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41. GPR 탐사 결과를 비롯하여 위험도 등급 및 후속조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 ‘위험도 지도’ 형태로 개선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42. 지반침하 관측망을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인바, 설치 대상 선정 시 대형 굴착공사장·지하철 공사장 등 고위험 구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43.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주변 공사·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착공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바 사전 조정 절차를 강화하여 반복적인 공정 변경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44.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중단된 사유 중, 서울-광명 고속도로 준공연기를 간과한 측면이 가장 크다 할 것인바, 본 사업과 연관된 주변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을 시정하여 추후 시민불편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45. 서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왕복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실제 도로 폭·교량 폭·구간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바, 현장 실측 및 교량 구조 검토를 통해 철저히 검토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46. LED 도로표지병은 빛길과 밤길에 시인성을 높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효과를 분석해 차선 시인성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설치구간 중 시공불량 구간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

(강동길 위원장)

47.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결국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대량 발생한바,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48. 서소문고가 개축 사업은 구조물 철거·신축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통 혼잡과 인근 상가·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정확한 교통량 예측,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단계별 우회·대체교통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49. 서울시가 지중화사업 154% 달성 등으로 홍보한 보도자료가 이월·보류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성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성과 홍보 시 산출근거·기준·적용범위를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 소지를 방지할 것.

(김동욱 위원)

50.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사업비 매칭 구조 등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보도자료와 상충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자료 작성·검증 절차를 정비하여 감사자료 및 대외 홍보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김동욱 위원)

51.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보행교 건립계획의 내용·진행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바, 보행교 설치 여부 등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는대로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52. 한강 23개 교량 중 다수가 노후한 방전등을 사용하여 경관효과가 낮고 유지비 부담이 큰 상황인바, LED 조명 전환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경관 조성에 적극 나설 것.

(김용호 부위원장)

53. 대한민국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한강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54.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일부 보차도 경계석이 표면 미끄럼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해당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거칠기기준을 강화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명확히 통보하고 적용여부를 점검할 것.

(이은림 위원)

55. 터널 안전경관등이 어두운 공간·연기 발생 상황 등 실재 재난 환경에서의 시인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소방 실화 재훈련장 등 실제 연기·열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실시할 것.

(이은림 위원)

56. 새롭게 적용하는 터널 안전경관등에 대해서도 소방 실화재훈련장 등 실제 연기·열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색상·밝기·설치기준을 보완할 것.

(이은림 위원)

57.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과 관련해 홍수 시 데크와 안전울타리 등의 시설들에 부유물이 적체되어 발생될 수 있는 유지관리 문제와 그로 인한 물길 변화에 따른 안전성에 대하여 보다 멀리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강동길 위원장)

58. 잠수교 전면 보행화와 관련한 접근성 개선공사가 특정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것.

(봉양순 위원)

59. 잠수교 전면 보행화의 접근성 개선공사와 관련해 연결로 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추진할 것.

(이은림 위원)

60.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미관 개선으로 인해 상판 하부 등 교량의 안전점검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남창진 위원)

6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대신 담쟁이덩굴을 심어 탄소중립을 실천해주길 바람.

([붙임]연번46 참조)

62.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도로 재포장 시 맨홀 높이 불일치로 차량 흔들림과 사고 위험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빗길·눈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맨홀과 도로 면의 수평 시공 기준 강화 등 신속한 점검·보완을 요청함.
([붙임]연번60 참조)

6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수석대교 노선 협의에서 서울시가 사실상 참여를 소홀히 하여 강일동 주민 교통불편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도 중심의 조정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감사 및 인접 지자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함.
([붙임]연번65 참조)

6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방화터널 공사로 6개월간 통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대체도로·소음·먼지 등 공사 영향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안내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붙임]연번84 참조)

6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깨지기 쉬운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존재함에도 서울시가 교체대책 없이 경고표시 위주로 대응해 보행 안전 위험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급한 교체대책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186 참조)

6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도로 굴착 후 보도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시 포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됨에도 서울시는 공사·복구 관리체계를 분산 운영하고 있어 현장 관리공백과 보행 안전위험이 반복되고 있는 바, 관행적 복구관리 실태에 대한 복구공정 통합관리 및 품질 확보 대책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202 참조)

6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88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 나들목 직전에 신반포역으로 나가는 시설물이 완공되었는데 몇년째 개통이 안되고 있음. 반포대교 나들목의 정체 해소를 위해 본 시설물의 조속한 개통을 요청함.

([붙임]연번424 참조)

68.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고투몰 점포의 다수가 전대·숨은 매매로 운영되고 관리법인과 중개업자, 관리공단까지 관행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정황이 지속되는바, 전대 악용으로 각종 불법이 반복되고도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사실확인과 조치를 바람.

([붙임]연번425 참조)

6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미국대사관 앞 횡단보도에 1년 이상 불법 천막이 설치되어 통행과 시야를 방해 함에도 종로구청이 부적절한 판례를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는바, 해당 불법 적치물에 대한 즉시 철거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처리 기준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450 참조)

[소방재난본부] — 52 건

1. 건축물 신축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 단계에서 소방 동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소방차 진입·회전·전개가 곤란한 구조에 대해서는 동의를 제한할 것.
(강동길 위원장)
2. 2025년 구조장비 구매 입찰에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인증을 요구하면서 1순위 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강동길 위원장)
3.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전입률(현행 70%)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입 비율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강동길 위원장)
4.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 현장대응 이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공상 불승인 시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강동길 위원장)

5. 광나루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는 유아 및 초등학생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 바 적절한 세대별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 및 노인시설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는 한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것.

(강동길 위원장)

6. 체험관 운영 인력에 대한 충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운영 인력의 사기 및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운영 인력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할 것.

(강동길 위원장)

7. 재개발·철거 예정 건물 등 실제 구조물을 적극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소방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8. 단순·반복 민원은 콜봇·챗봇 등 AI 안내로 우선 처리하고, 상담 정확도·응답시간 등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

(김용호 부위원장)

9. 굴착 공사장 내에서의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와 30년 이상 된 노후 가스배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더불어 신기술 탐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0.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이 국가·외부기관 장애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체 정보 제공 및 출동대 안내 절차를 포함한 비상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요 건축물·도면·도로 정보는 사전 캐싱·로컬 백업을 통해 장애 상황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1. 성산대교 외 자살예방 CCTV 미설치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입찰·계약 분쟁 원인을 신속히 재점검하여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 향후 CCTV·구조장비 등 유사 사업에서 규격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 제도를 개선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2. 종합방재센터·119안전센터·특수구조단·시민안전체험관 등 전 부서가 급식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도 단가 인상분을 검토하고, 급식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해소하여 소방관의 기본 근무여건과 복지를 균형 있게 개선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3. 20~30년 이상 노후된 119안전센터에 대해 노후도와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3~5개년 청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정책사업비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4. 현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용역 형태로 운영중인 교육(교수) 인력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해 지속적인 교육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건비의 현실화와 근로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김용호 위원)

15.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보완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16.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을 시범운용 과정에서 열화상 및 실화상 카메라를 통해 고온 지점과 화염·연기를 식별하고 있으나, 열감지센서 기반 AI 감지 알고리즘이 단순 열원에도 반복적으로 고온 경보를 발생시키는 사례로 인해 상인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바, 정확도 개선 또는 별도의 매뉴얼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17.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대상 보급 속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매칭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순위 조정·홍보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폭 확대 보급을 추진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18. 소방의 적법활동에 따른 피해 손실 보상이나 부적법 활동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지급된 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김동욱 위원)

19.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수시 개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출석률·활동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적 쇄신과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것.

(김동욱 위원)

20. 소방대원 폭행·방해행위에 대해 주취 등을 사유로 처벌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관행을 배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력한 형사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

(김동욱 위원)

21. 서초 내곡동, 강동 암사동과 고덕동 등 비닐하우스 단지를 살펴보니 ‘보이는 소화기’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아 미배치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할 것.

(김혜지 위원)

22. 소방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중 바디캠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김혜지 위원)

23. 건축공사에서 소방감리 보고서만 보고 완공승인을 해주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소방청과 협조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

(남창진 위원)

24. 종로 소방합동청사를 비롯한 유사 공공건축·합동청사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산정 오류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반복되는 비효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소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남창진 위원)

25. 비상발전기 교체 시 중앙부서 차원의 ‘표준 용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과대·과소 설계를 방지하고, 실제 필요부하·청사규모·수보 체계 등을 반영한 용량 재산정 절차를 마련할 것.

(남창진 위원)

26. 자율소방대의 기본 장비인 조끼·유니폼 지급을 조속히 보급하여 조직 소속감과 화재 초기대응 역량 제고에 실효성을 확보할 것.

(남창진 위원)

27. 현재 시민안전체험관 일일 최대 수용인원이 440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와 시설 활용도를 높여 일일 수용 최대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

(남창진 위원)

28. 소방관의 업무 특성상 시민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관련 징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소방관의 근로 의욕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박성연 위원)

29. 여의도·반포·뚝섬·광나루 수난구조대의 노후·협소 문제 해소와 수난 구조장비 성능 저하에 대비한 장비 교체·보강 등을 포함하여, 중기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박성연 위원)
30. 한강버스 운영 및 마곡권역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5의 수난구조대 신설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31. 광진구 등 119안전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신규 설치·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노후 청사는 전면 개보수·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32.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감소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 비율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개발사업 연계 세입 확충 등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33.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급량비·출동 간식비 등 관련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박성연 위원)
34. 매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등 무리한 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심리치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은림 위원)

35.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근무 배치 제한, 심리상담 연계, 법률 지원 안내, 동료·상급자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이은림 위원)

36. 소방대원·가족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오디오북 등)등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이은림 위원)

37. 체험관은 어린이, 학생,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접근성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이은림 위원)

38. 체험관 인근에 어린이대공원과 상상나라 등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연계성과 교육 시너지를 높이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체험관을 방문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이은림 위원)

39. 시민체험관은 가족 단위,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가족화장실 등 가족 친화형 편의시설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이은림 위원)

40. 공동주택이나 피난약자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체 자율점검시스템에 맡기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다 사료되는 바,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최민규 위원)

41. 지반침하 발생 시 초기 구조 이후의 2차 위험요인(추가 붕괴·지반 약화 등)을 재난안전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재난 매뉴얼·역할분담 구조를 전면 재정비할 것.

(최민규 위원)

42. 재난 발생 시 ‘모든 판단·책임이 소방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체계·역할분담을 명확히 재설계하고 관계부서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

(최민규 위원)

43. 현재 체험관 운영 현황을 보면 타 시·도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이용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예약 후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최민규 위원)

44.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바 제도개선(조례 제정 등), 매뉴얼 제작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45. 리튬배터리의 과충전·과열 방지를 위해 충전시간 및 충전율 제한 등 안전 장치에 대하여 소방청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봉양순 위원)

46. 소방공무원 방화복 전용 세탁기는 KFI 인증제품이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조속히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

(봉양순 위원)

47. 방화복 세탁은 전문성과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탁세탁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는 반면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탁 후 손상 우려 및 수거의 불편 등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체세탁 체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위탁 + 자체세탁’ 운영전략을 검토할 것.

(봉양순 위원)

48.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대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봉양순 위원)

49.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119수난구조대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는바 기획조정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인원이 신속히 확보·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성흠제 위원)

50. 2025년 5월 소방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소방은 2024년 이전에 마포와 강남에 시범적용 이후 적극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성흠제 위원)

51. 119 AI 종합상황관리 시스템은 재난 신고 접수의 정확도와 골든 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시범운영 단계부터 오류율·정확도·처리시간·골든타임 단축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관리하는 실증 검증체계를 즉시 구축할 것.

(성흡제 위원)

52. 119 AI 종합상황관리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오류 사례·유형을 정량적으로 기록·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상시 검증과 자문을 제도화하여 본격 운영 이전에 대외적 검증을 완료할 것.

(성흡제 위원)

[물순환안전국] — 26건

1. 서울시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지원사업’ 10개 중, 현 단계에서 4개 사업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남창진 위원)

2. 현재 중랑·난지·탄천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가 PIMAC에서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직접 건설하는 방식은 경제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물재생시설공단 운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남창진 위원)

3.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하수도 보급률’ 항목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보급률 100%를 달성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해서 동일하게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 항목을 개발할 것.

(박성연 위원)

4.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하천부지 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잦은 침수로 복구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

(박성연 위원)

5. 노후 하수관로가 쥐 등의 설치류 서식지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류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바,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생 안전 측면을 별도로 관리하고, 보건당국과 정기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방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

(봉양순 위원)

6. 최근 청계천에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이 4km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사하여 제거할 것.

(봉양순 위원, 이은림 위원, 김용호 부위원장)

7. 하천 점용료와 변상금 체납이 과다하다 판단되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강력히 징수 조치할 것.

(봉양순 위원)

8. 물재생센터 내 시민 이용시설의 경우 선착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이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인이 과다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성흠제 위원)

9.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결과보고서가 실질적 평가가 아닌 형식적 문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사료되는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투명한 지표를 공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성과의 실질화를 검증할 것.

(성흠제 위원)

10. 미군부대 유류오염에 따른 UN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관리기준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바, 녹사평역 주변 UN사 부지까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차수벽의 설치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1. 현재 물산업 R&D 공모대상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물순환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R&D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2. 빗물펌프장 펌프 모터의 경우 교체주기를 하천관리과 방침상 최대 30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이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2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내용연수라 여겨지는바, 필수 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것.

(김혜지 위원)

13. 침수 예상지역 도로에 설치된 수위계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비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이를 재점검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김혜지 위원)

14. 우이천 등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망권 불편 및 운동공간 상실 등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동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김동욱 위원)

15.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배출시설 TMS 미설치 구간은 사실상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로, 최소한의 모니터링 보완책이 필요한 만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시설의 안정적 운전 능력과 실질 배출 저감 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것.

(김동욱 위원)

16. 하수처리 비용 중 오수를 제외한 빗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법적으로 일반회계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부담한 적이 없는바, 서울시가 법적책임을 다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17.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의 방재성능목표를 현재 설계빈도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바, 조속히 성능개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18. 물재생센터의 약취가 법적기준 이내이거나 비규제물질인 경우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최민규 위원)

19. 대형 굴착공사장 지하수위 실시간 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한 센서 설치가 아니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20. 강서구 염창동 하수맨홀 보수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돌발 강우시나 강수확률이 50%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지켜지지 못하였는 바,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은림 위원)

21. 강서구 염창동 하수맨홀 보수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발주·감독의 부실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구 사업의 경우 발주단계에서 계약구조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

(이은림 위원)

2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정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바 전입금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

(강동길 위원장)

23. 시민제보 사항 중 영등포 버드나루로 지반침하 긴급복구공사가 현장에서 임시복구 현장을 지나던 차량이 같은 위치에서 다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각 자치구별 지반침하 긴급복구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임시복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할 것.

(강동길 위원장, 시민제보사항)

24.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기반 부재로 국비 등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서울시 자체 재원이나 기타 예산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시민제보사항)

25.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효율 측정 결과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다수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설비 교체 및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

(남창진 위원)

26.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 권역 사업의 예산이 대규모 연쇄 이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대규모 이월 발생 사유를 검토하고 집행 중심으로 로드맵을 철저히 정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남창진 위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6건

1. 물재생센터 내 시민 이용시설의 경우 선착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이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인이 과다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성흠제 위원)
2.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배출시설 TMS 미설치 구간은 사실상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로, 최소한의 모니터링 보완책이 필요하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시설의 안정적 운전 능력과 실질 배출 저감 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것.
(김동욱 위원)
3. 물재생센터의 악취가 법적기준 이내이거나 비규제물질인 경우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최민규 위원)
4. 최근 공무원의 징계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역시 공공부분의 종사자로서 동일한 수준의 윤리 청렴 기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등을 포함하여 인사규정을 조속히 상위 관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
(강동길 위원장)

5.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효율 측정 결과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다수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설비 교체 및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

(남창진 위원)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와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결과 직장 내 인권보호, 정보 접근권 및 참여권 등에서 개선과제가 도출된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 할 것.

(봉양순 위원)

[건설기술정책관] — 15 건

1.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23년도 국토부의 동일한 선행 연구용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토부 지침만 고려한 것은 연구용역의 중복성 문제와 실효성 저하 문제를 낳을 수 있는바, 시정조치 할 것.
(성흠제 위원)
2.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량·터널·하수관로 등 시설별 내구연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과연수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바, 시설 특성과 구조적 안전성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성흠제 위원)
3.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경우 '24년도에는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축물관리법」상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의무 보강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미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
(봉양순 위원)
4. 연간 650억 원을 투입하는 고용개선지원비 제도가 현장 인지도 및 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설계단계 고용개선비 자동 반영과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 설계·운영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
(봉양순 위원)

5. 한파·폭염 시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극한기후 안심수당예산 11억원을 편성했음에도 수혜자는 2명에 그치고 있는데, 소득·근속일수·대상자 범위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

(김용호 부위원장)

6.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한 미비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별칙 규정 등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최민규 위원)

7. 건설업 부적합사업자가 점검 시기에만 형식요건을 갖추고 이후 다시 위장·회귀하는 등 형식적 단속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전수조사 및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

(강동길 위원장)

8. 건설업 부적합사업자로 적발될 경우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수단이 아니라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바, 타 자치단체의 입찰 적격심사 사전 전수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입찰단계부터 문제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9. 건설기술정책관이 운영 중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

(박성연 위원)

10.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바, 적정한 소요 예산편성과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시정할 것.
(이은림 위원)
11.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이 공정성·투명성·성과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 다각화 및 활성화에 힘쓸 것.
(박칠성 부위원장)
12.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242대 중 약 32.2%(78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바, 장비 교체 5개년 계획을 현실화하고 노후 장비 우선 교체 및 예산을 확충하여 시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것.
(김혜지 위원)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에게 심의·수당이 편중되고 출석률 저조 위원이 연임되는 등 공정성·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상 해촉 근거를 활용하여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정리가 필요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정비할 것.
(김동욱 위원)
14. 건설공사장 근로자 중 여성 산재가 최근 5년 동안 약 2배 상승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므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이은림 위원)

15. 공공발주 공사는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이나 민간 현장은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의 법적 근거와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뉴얼 현실화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정착을 도모할 것.

(남창진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0 건

1. 도기본에서 소관 7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성흠제 위원)
2.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가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 도중에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로 중단되어 원상복구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서울-광명 고속도로 개통이 연기된 주변 환경영향을 간과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바, 공사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성흠제 위원)
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착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통학로 및 산책로가 고려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성흠제 위원)
4.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장 인접 아파트 및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발파로 인한 진동 및 지반침하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한바 주택가 인근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반영할 것.
(봉양순 위원)

5. 지난 2월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후조치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추후 보고할 것.
(봉양순 위원)
6. 월드컵대교 공사에서 양화 인공폭포 설치공사를 전문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원도급사에서 다시 하도급사로 내려가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별도 분리발주 했어야 한다고 여겨졌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7. 월드컵대교 공사와 관련없는 대관람차 지반조사 용역, 테니스장 조성 등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시정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8.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평면화 공사 중지 이후 5차로 확대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바, 설계를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9.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교통우회를 위한 임시도로의 경우 사면성토가 계획되어 있는바 호우 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가도 설계 및 시공에 주의를 기울일 것.
(남창진 위원)
10.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로 인한 우회 임시도로의 다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차도 공사현장으로의 추락 위험에 대해 대비할 것.
(남창진 위원)

11.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 중 대모지하차도 공사를 실시하면서 가시설 설계를 누락하여 공사비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남창진 위원)

12. 도기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3. 건설공사장 공사장 CCTV 합운영시스템의 영상보관 기간이 1 개월에 불과하여 준공 후 하자나 부실공사 발생 시 활용할 수 없는바 보관기간의 적정성과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

(박성연 위원)

14. 공사장 CCTV 운영이 사고 후 확인이 아닌 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CCTV 운영방안을 강구 할 것.

(박성연 위원)

15. 실시간 위험감지 AI가 접목된 CCTV 설치를 확대할 것.

(박성연 위원)

16. 건설공사장 근로자 중 여성 산재가 5년새 2배가 상승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이은림 위원)

17.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부실벌점제도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김동욱 위원)

18. 한양도성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중 해체방법 및 봉원구간 등 당초보다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김동욱 위원)

19. 9호선 4단계 3공구 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 자료에 있는 정보와 실제 설계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 등 주민설명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바,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보완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0. 도기본 발주 공사 전반에서 GPR탐사 단가의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GPR탐사 단가 산정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21. 도기본 소방시설공사 중 무등록자에게 현장소장을 맡겨 공사를 위임하는 등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거나 불법하도급 지도·감독 소홀이 적발된바, 하도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할 것.

(강동길 위원장)

22. 도기본 공사장 스프링클러 차단, 용접 불티 관리 등 화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여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강화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3. 사천펌프장 유입관로 현장은 24년 8월경 발생한 연희동 땅꺼짐 사고와 인접한 현장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안전지수 미흡을 받은 바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강동길 위원장)

24. 빗물펌프장 악취와 관련하여 기준치 충족 여부와 별개로 주민 체감도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민원 수준을 반영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최민규 위원)

25. 안전지수제 인센티브 중 도기본 점검 1회 면제가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현장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인센티브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최민규 위원)

26. 건설현장 안전지수제 등급이 양호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외부 전문가 등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은림 위원)

27. 유입관로에 악취방지시설과 자동유량계 설치 등을 검토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8. 건설공사장 내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 간의 소통환경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 할 것.
(봉양순 위원)
29. 안전지수 평가 결과 작업환경분야, 고위험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개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박칠성 부위원장)
30. 안전지수평가에서 작업계획 소통, 협의, 계획 수립 등 작업 소통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가 점검일로만 기록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개선할 것.
(김혜지 위원)

[재난안전실] — 6 건

1. 도로열선 전력요금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과도한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한전·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목적 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단가 조정·할인 방안을 다시 적극 건의할 것.
(박성연 위원)
2. 각 자치구에 설치된 도로열선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이 각 자치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한 인하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3. 최근 정부의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방침과 관련하여 서울 시와의 중복 체크로 지하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는바,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선제적으로 지반침하에 대응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4. 대형 경기장과 지하철역 등 다중운집 시설에서 경기·행사 종료 후 단시간 내 인파가 집중·이동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접목한 인파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5.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파사고 예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파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독려하고, 필요 시 구청과 협조하여 점검·지도 기능을 강화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6.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물량 감소 및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는 도로포장 소규모 연간단가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발주방식에 대해 검토해 볼 것.

(강동길 위원장)

[소방재난본부] — 5건

1. 공동주택 등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을 실내에서 충전하던 중 폭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내 공용 충전·보관 공간 설치 등을 검토할 것.
(봉양순 위원)
2. 드론·사족보행 로봇 도입이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도록 대원 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입 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김동욱 위원)
3. 현재의 시민안전체험관 체험 콘텐츠는 단순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학습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콘텐츠 다양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해 체험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
(김용호 위원)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구역은 현행법(환경친화적 자동차법·주차장법 등)상 소방이 직접 점검·개선할 권한이 없어 화재취약성이 우려되는바,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붙임]연번107 참조)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강동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관련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모집 기간·공고 방식·정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허점 없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체계로 정비할 것.
([붙임]연번134 참조)

[물순환안전국] — 5건

1.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박칠성 부위원장)
2. 수변활력 거점조성 사업 중 송파 성내천 사업의 경우 안전 가시 설 보완, 주변 상권 분석,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해 보이는 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주기 바람.
(남창진 위원)
3. 개포로 53길 하수암거 설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기존 선로를 변경함에 따라 주변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완을 실시해 주기 바람.
([붙임]연번171번 참조)
4. 서울시 내 파손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해 근본적 교체 대신 경고 표시만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 및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조속히 교체해 주기 바람.
([붙임]연번186번 참조)
5. 중구 퇴계로 남산서울빌딩(SK) 옆 남산 오름길 초입에 강우시 계단으로 빗물이 흘러넘쳐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붙임]연번80번 참조)

[물재생시설공단] — 1건

1.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공공예식장 지정 이후 이용실적이 전무하므로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이용 촉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김동욱 위원)

[건설기술정책관] — 5 건

1. 기술직 공무원 대상 온라인 기술 정보 공유 채널인 서울기술이야기 등의 조회수가 월 400건 내외에 그쳐 활용도가 낮은바, 내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적극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
(남창진 위원)
2. 기술직 직장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 강좌 수 확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박칠성 부위원장)
3. 부실공사 제로 정책 포럼에 대한 개최 실적이 부진한데, 건설상 시장·신기술 발표회 등과 연계하여 연 1~2회 정례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신기술 활용 촉진, 건설업계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4. 해체공사 허가·신고가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 해체공사 점검 실적과 안전역량에 따라 교부금 등의 예산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인하도록 하기 바람.
(강동길 위원장)

5. 해체공사 상시점검·하도급 점검·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증
가에 대응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과 단위 2~3개 팀 체제로
확대하는 중장기 조직·인력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이은림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4 건

1. 공사중 실정보고가 절차상 남용되고 있고, 실정보고 승인 기준 조차 불명확하다고 보여지는 바, 구조적으로 공정 단계 개선을 검토할 것.
(최민규 위원)
2. 다국어통역시스템을 ONE-PMIS와 연동한 건설안전 예방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이를 공공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
(김용호 부위원장)
3.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로 중대로2길 4차로를 폐쇄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우회 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
(남창진 위원)
4. 사천펌프장 유입관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과 유입관로의 설계빈도가 30년 강우강도임에 따라 향후 관로 단면 확장 및 재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할 것.
(박성연 위원)

다. 기 타(자료제출 등) 45건

[재난안전실] — 10 건

1. 한강교량 견립년수, 최근 보수보강 내역, 향후 보수보강 계획

(김용호 부위원장)

2.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계획

(김용호 부위원장)

3. 신기술 계측기 46개소 설치 현황

(김용호 부위원장)

4. 2차 신기술 4개 현황

(김용호 부위원장)

5. 신기술설명회(기술심사담당관) 때 발표된 추가 신기술 현황

(김용호 부위원장)

6. 2025년도 도로사업소, 공단의 도로시설물(지하차도·터널 등)

청결·세척 실적

(김용호 부위원장)

7.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목록, 명단, 각 위원 임기, 재임·신임

여부, 회의개최 횟수, 지급 내역

(김동욱 위원)

8.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현황

(강동길 위원장)

9. 지중화사업 254km 추진구간 상세 현황

(김동욱 위원)

10. 잠수교 전면보행교 건립 계획

(김용호 부위원장)

[소방재난본부] — 13건

1. 공동주택(강남구 소재) 건축허가 동의 관련 탄원이 제기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소방 동의 관련 자료
(강동길 위원장)
2. 소방의 구조장비 입찰·계약 민원 관련 자료
(강동길 위원장)
3. 공상 불승인 관련 심사청구·행정소송 지원체계 관련 법률 지원안에 대한 자료
(강동길 위원장)
4. 서울시 도시가스 배관 총 연장·노후배관(30년 이상) 현황, 굴착공사장 점검 실적, 정기검사(연 1·2회) 및 IoT·드론 진단 운영 실적과 향후 보완 계획 자료
(김용호 부위원장)
5. 20년 이상 안전센터에 대한 시설보수 계획안 자료
(김용호 부위원장)
6. 서울시내 건설현장 연동형 경보설비 설치 현황 자료
(박칠성 부위원장)
7. 소방재난본부 산하 서울시위원회의 최근 2개년 위원회(자문회의 포함) 개최 횟수·지급내역·출석률·회의록 자료
(김동우 위원)

8. 보이는 소화기 최근 2개월(9~10월) 전수점검 결과(파손·불량·쓰레기 적치 등 포함) 자료
(김동욱 위원)
9. 최근 3년간 배상책임보험 처리 현황(미결 원인 포함), 경미·상식 이하 사례 목록 및 심의 사유
(김동욱 위원)
10. 보험사와의 협의체계,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오븐에 주수하여 오븐 손상 등) 및 검토 의견 자료
(김동욱 위원)
11. 여의도 수난구조대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 내역
(박성연 위원)
12. 최근 3년간 시민안전체험관이 받은 기부물품 내역
(이은림 위원)
13. 비인증 방화복 세탁기에 대한 교체 계획
(봉양순 위원)

[물순환안전국] — 11건

1. 성북천 수변감성도시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공정, 사업비 등 상세한 자료
(강동길 위원장)
2.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전체 목록 세부사항(사업예산, 기간, 위치, 기본·실시설계, 시공발주부서 등) 제출
(강동길 위원장)
3. 빗물펌프장 내구연한 경과 설비(내구연환경과 안전관리, 설비교체계획 등) 관련 자료
(박칠성 부위원장)
4. 우수처리비용 전입계획과 관련 자료 제출
(박칠성 부위원장)
5. 강남구(양재, 대치동) 빗물펌프장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월별)
(김동욱 위원)
6. 물재생센터 반류수 처리시설 설비 운영현황 및 문제점
(남창진 위원)
7. 대심도 예산현액 중 내년 이월되는 보조금 내역 및 현황
(남창진 위원)
8. 대심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원별 해소방안
(남창진 위원)

9. 강서구 하수관로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 조치 현황
(이은림 위원)

10. 30년 이상,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자치구별 상세자료
(봉양순 위원)

11. 하천점용료 등 체납 관련 자료(변상금 징수율, 결손처리현황,
점용사유 등) 제출
(봉양순 위원)

[물재생시설공단] — 1건

1. 물재생센터 반류수 처리시설 설비운영 현황

(남창진 위원)

[건설기술정책관] — 7 건

1. 부적합 건설사업자 최근 단속 22건에 대한 업체 리스트 및 조사원 인적사항(개인정보 비식별)
(강동길 위원장)
2.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연도별 편성액·집행액·반납액 및 미보강 대상 건축물 현황과 자치구별 추진 실적
(봉양순 위원)
3. 최근 3년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집행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봉양순 위원)
4. 고용개선지원비·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및 중앙정부 법령 개정건의 현황
(김용호 부위원장)
5. 품질시험소 시험장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장비 노후·오류로 인한 부적합, 재교정, 재시험, 성적서 정정 및 시험 지연·중단 사례에 관한 현황 자료
(김혜지 위원)
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8기 위원의 출석률, 심의수당 지급현황, 분야별 안전 처리 건수 등 위원회 운영 실적
(김동욱 위원)

7.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25년 실시한 대한건
설협회 대상 교육·설명회 자료 및 서울시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수조사 결과
(강동길 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 건

1.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총사업비 및 현재 집행 내역 자료
(박철성 부위원장)
2. 건설기술심의 및 부실별점제도 설명자료
(김동욱 위원)
3. 공사장 안전사고 관리실태
(김동욱 위원)

[붙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붙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연번	제목	주요내용	세부내용
17	동부간선도로 월릉 IC 램프 A 위치 이전 촉구의 건	1호선 신이문역 인근 중랑천 뚝방길이 폐쇄되어 2차선 도로가 되고 지하도로 진입램프가 생길 예정임. 동부간선도로 월릉 IC 램프A 위치를 재검토 해주길 요청함 .	중랑천 뚝방길은 하루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통학로임.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으로 인해 한두달전 갑자기 산책로가 폐쇄되고 지상 2차선 도로 및 지하도로 진입램프가 생긴다고 플래카드가 게첨 됨. 이는 인근 아파트의 약 1,500세대 주민들에세 소음,진동, 분진,대기질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임. 주민들의 기본권과 100여명의 석계초 학생들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월릉 IC 램프A 위치를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림.
20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 황토길 예산 낭비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의 산책길과 황토길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사라질예정이고 이후에 공사가 끝나면 일부 산책로와 황토길을 다시 조성한다고 함. 이러한 예산낭비를 정부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함.	2024년 개장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의 황토길이 이용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하여 중랑천 제방길의 산책로와 황토길이 없어진다고 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2023년에 실시협약과 승인이 있었는데 왜 굳이 몇년 이용하지도 못할 황토길을 조성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함. 알고도 예산낭비를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21	동부간선도로 월릉IC램프-A 건설 위치이전 촉구제목 :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 -A 건설 위치 이전	현재 계획되어 잇는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공사의 위치 이전(또는 반대)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함.	주요문제점 1. 통학로 안전 위협 2. 주민 여가·휴식 공간의 상실 3. 거주·생활환경 악화 4. 안전문제(지반 침하·건축물 위험) 요구사항 1. 월릉IC 램프-A 건설 전면 재검토 및 램프 위치 이전 요구. 2. 공사 진행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3.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공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3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관련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공청회,설명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람.	월릉IC Ramp-A 공사로 인해 갑작스레 아이들의 통학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음. 시청과 구청, 건설사에 문의하니 절차대로 공청회를 마쳤다는 답변만 돌아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조금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청회,설명회등을 공지하고 해당 공청회 내용 및 참석자들의 의견이 기록된 문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31	동부간선 월릉IC 램프 A 이전	월릉IC 램프A 공사위치 이전 요청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도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발표가 있는 공사임에도 주민들의 동의 또한 받지 않음.
32	월릉 ic ramp A 공사지역 지정에 대한 감사와 공사 중단을 부탁 드립니다.	본 사업이 타당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 한것은 아닌지 행정감사를 요청함.	1.아이들의 유일한 통학로이고 2. 많은 예산을 들여 산책로를 정비하였음.

3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 사업 (Ramp-A 구간)으로 인한 중랑천 뚝방 산책로 훼손 및 주민 안전 우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중 Ramp-A 구간 공사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점검과 시정조치를 요청함.	서울시에 다음의 행정대응을 요청함 1. 서울시 차원의 Ramp-A 구간 현장 실사 및 공사계획 재검토 2. 중랑천 뚝방 산책로의 홍수방지 및 안전성 영향 평가 실시 3.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실질적 의견 수렴 절차 마련 4. 대체 보행로 및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 구체화 5. 공사차량 운행 제한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 6. 주민과의 보상·대책 협의 공식 창구 개설 7.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38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위치 이전촉구!!!	동부간선도로 월릉IC 램프-A 건설 공사 위치 이전(또는 반대) 및 재검토를 요청함.	요구사항 1. 월릉IC 램프-A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위치이전 2. 공사 진행 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3. 환경영향 평가 및 안전성 검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 4.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공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46	방음벽 담쟁이덩굴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대신 담쟁이덩굴을 심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요청.	방음벽은 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조류 충돌의 문제도 있음. 담쟁이덩굴로 벽면녹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절감, 열섬현상 완화로 시민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음.
60	도로 재포장 시 멘홀 표면과 수평 유지 제안	도로 재포장시 멘홀 표면과 수평 유지 제안의 건	서울시내 및 인접도로의 일부 파손구간을 재포장시 차량의 안전한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시내도로내에 설치된 멘홀이 여러 곳에 지속적으로 있으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표면과 멘홀 뚜껑 높이가 맞지 않아 자동차가 주행시 빈번하게 훈들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노후 차량 또는 오랫동안 주행시 자동차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크고 빗길 또는 눈길, 브랙아이스 발생시 전혀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임. 향후 도로 포장 또는 재포장시 멘홀 표면과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최대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음.
65	비합리적인 수석대교 노선 확정의 되풀이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의견제시 절차 개선	수석대교 건설사업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만큼 노선갈등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1. 서울시가 수석대교 노선 갈등 및 서울시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양시의 요구안별로 서울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여부 감사 2. 직접 이해당사자인 강동구에 이 소식을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지시여부 감사 3. 올림픽대로 교통량 증가를 이미 파악했는데, 대략 어떤 도로에 교통량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는지 감사 4. 강일동 주민들에게 노선에 대한 의견전달의 적절성 여부 감사 보완 사항 1. 서울시를 통과하거나 인접하게될 기피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해, 시의 입장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관련 자치구에 즉시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되게하는 절차 마련 2.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익에 맞는 입장을 확정하면, 이에 반대하는 외부 지자체와의 갈등을 본청이 총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80	남산 오름길 경사로 계단 빗물 넘쳐 하 수 설치했으 면	중구 퇴계로 남산서울빌 딩(SK) 옆 남산 오름길 초입에 강우시 계단으로 빗물이 흘러넘쳐 보행에 불편함.	그로부터 50m떨어진 남산 오름길(계단) 역시 비가 오면 옆 화단 모래흙이 인도로 흘러 넘침. 작은 하수로를 설치해 빗물이 지하 수로 흘러 들어가도록 요청함.
84	강서구내 방 화터널 공사 대안없이 막 기만 해서 교 통해결방안이 있는것인지	광명과 연결 공사로 인해 강서구 방화터널이 막혀 6개월간 주민들에게 불편 을 초래하였으나 주민들 은 사전에 제대로된 안내 도 받지 못함.	도로공사 시에는 대체도로나 소음등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음.
107	서울 특별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 일부 개 정 후 점검 및 이행 결과 확인 필요	2025년6월에 개정된 [서 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 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후 점검 및 이행결과 확인을 요청.	본 조례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시 이격 거리 확보 로 화재확산 방지근거를 만들었으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점검결과 를 찾을 수 없으니 본조례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요청함
119	싱크홀 제보 서	2025년 7월 제보자는 영 등포구 맨홀 공사 현장에 서 포트홀 사고를 당함. 현장에는 아무런 안전표 지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 았음.	영등포구와 건설업체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음. 영등포구와 공사업체를 감사해주기를 요청함.
127	월계 IC관련 제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 업으로 인한 산책로 훼손 통학로 안전 위협 및 인 근 아파트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감사 요청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보 공개 없이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문동 산책로와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임.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도 위협받을 상황 임에도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적극적 대응이 부재하여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감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함.
12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고 속이고 민자 도로 건설하 려는 서울시	이문동 산책로 길과 주변 아파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아닌 민자 화 도로 건립에 대한 철 회의 건	이문동 산책로 길과 주변 아파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를 한다고 9월에 안내문을 붙이고,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덮히고 수 변공원이 된다고 주민들은 좋아진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없었음. 그런데 알고보니 지금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공사가 아닌 동부간선도로 옆으로 통행료를 걷는 민자화 도로를 만드는 공사 고. 월릉IC A램프 진입로라고 함. 이문동 산책로 통학로 민자도로 진입로 공사 철회를 요청함.
130	형식뿐인 주 민설명회, 공 사 직전에야 알게 된 이문 동 월릉IC 공	최근 진행 중인 월릉IC (동북간선 지하도로 연결 램프) 공사가 절차적 정 당성을 상실한 채 강행되 고 있음을 제보함.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공사로 직접 피해를 입는 이문동 주민들(이문푸르지오, 현 대아이파크, 대성유니드 등)은 2025년 9월 공사 직전에야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주민 기만이며 절차적 위 법 소지가 있음.

	사 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는 본 사안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여부, 주민 고지의 적법성, 설계 변경의 재협의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문동 주민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람.
131	동부간선 지하화 관련 월릉 IC 램프구간 위치 설계	산책로(석계초 통학로)를 없애고 지하차도 진입 램프 구간 공사 반대의 건	이문동 주민으로서, 최근 집 앞 산책로(석계초 통학로)를 없애고 지하차도 진입 램프 구간 공사가 시작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공사가 임의로 착공되는 것을 반대함. 동대문구청은 이를 알고도 주민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는지 안내하였다며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몇명에게나 동의를 받았는지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함.
132	이문동 동부간선로 진입 위치 변경 요구	이문동 동부간선로 진입 위치 변경 요구의 건	이문동 대우1차 입주민으로서, 삼천리 연탄공장과 신이문 기지창으로 인해 많은 소음과 불편을 겪었는데 연탄공장이 나가자 마자 그자리에 진입로를 만든다면 이문동 신이문역기지창쪽 주민들을 최악으로 모는 것이라 사료됨. 단지 뚝방 산책길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안 삼고 살았는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되며 5억원정도의 경비를 들어 조성한 황토길과 산책로인 뚝방길을 없애고 소음과 먼지 등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제일 참을 수 없을것 같아서 위치 변경 요청함.
134	강동구 의용소방대 모집 관련	강동구 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운영 사항을 포함한 감사 청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강동구 의용소방대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다수인데 강동소방서는 상반기 동시모집때 소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모집기간이 조례에 명시된 기간보다 하루 짧았고 다른 구처럼 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추가모집이 없었음. 강동구에는 쟁크홀도 발생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니, 오히려 의용소방대원 정원을 현재보다 100명을 늘리고, 공개모집 동시모집을 강동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 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등 큰폭의 확대와 변화를 촉구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구 소방서 의용소방대 모집 운영 사항을 포함하여 엄중히 감사해주길 요청함.
171	개포로 53길 하수암거설치 관련 주민안전을 지켜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벽면 2m 거리에 6m가 넘는 하수관로를 기존선로를 변경하여 설치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설명이나 고지없이 허가해준 강남구청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행태와 시행사의 공사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주민들의 안전요구를 경시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책임을 요구	민원건은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비관리형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당초 개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시행 인가시에 대로인 선릉로로 공공우수관로를 경유하도록 인가되었으나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로1차선도 안되는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앞 도로로 변경 인가되었음. 2024년 1월 하수암거 설치 시공사인 홍문종합건설에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관련 설명을 요청하여 주민 몇명이 참여해보니 지하 10 m깊이에 2m크기의 하수관을 아파트 지하벽면 2m 거리에 설치한다는 1차 설명을 하고 지하안전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차 설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이에 민원인이 강남구청 치수과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도로침하, 쟁크홀발생등 아파트안전성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였음. 공동주택아파트 벽면 2m거리에 6m가 넘는 하수관로를 기존선로를 변경하여 설치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설명이나 고

			<p>지없이 허가해준 강남구청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행태와 시행사의 공사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주민들의 안전요구를 경시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책임을 요구함.</p> <p>선로변경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한지 사전에 안전성검토, 주민설명, 주민동의절차등의 행정절차는 적법했는지 투명하게 확인을 요청함.</p>
186	깨지기 쉬운 콘크리트로 만든 맨홀 뚜껑에 대한 빠른 교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구성이 약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함.	시민 아전에 위협이 되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를 행정감사 해주길 요청함.
194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 문제 등이 대두됨에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예산 불용 처리도 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현재 서울시 하수관 56% 가 30년 이상된 노후관인데(전국 평균은 31%) 이는 지반 침하의 대표적인 원인이 됨. 다른 시에 비해 하수관 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행정감사를 요청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노후 하수관 중 30년 이상이 31%인 것에 비하여, 서울시는 56%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이유 이로인해 지반침하,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련된 예산을 쓰지않아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 향후 개선방안 등을 행정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청함
202	서울시 내 보도 공사 및 포장 복구 공정의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보	도로 굴착 공사 이후에 보도블록 복구를 제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관리감독 책임도 공기업, 자치구, 민간사업자로 분산되어있어 사후 관리가 미흡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복구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 포털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복구 품질 사후 점검제 도입. 복구 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도 침하, 파손, 배수불량 여부를 재점검하고 불량 판정시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 명령을 의무화 하자 발생 시 행정 제재 강화. 복구 후 1년 내 동일 하자 발생 시 하자보증금 즉시 환수. 재발 업체는 차기 공공입찰 참여제한 규정 신설 시민 참여형 신고체계 운영 보도 파손이나 미복구 구간을 시민이 사진으로 제보하면 접수 즉시 현장 담당자에게 전송되어 조치 결과를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
309	이문동 동부 간선 지하화	동부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A 구간(진입 구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반 안전상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하려는 진입구간에서 약 10~20M 떨어진곳에 약 1,500여

	월릉IC 램프 -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원제기	관련 민원제기의 건	<p>세대가 사는 고층 아파트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 작업도 이루어 진다는데 하천옆이라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 우려됨 (싱크홀 등) - 이미 기 공사중인 신이문역 쪽 이문2동 복합청사 공사현장에서 지난 7월 싱크홀 발생으로 건물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더욱 불안함 <p>2. 초등학생 아이들의 통학로와 산책로가 없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진행하면서 동부간선 옆 산책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산책로는 약 120명의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이며 주민들의 귀중한 산책로임. - 건너편 보도는 좁은 보도에 건널목 2개, 지하터널 등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며,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좁은 도로에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발생됨. - 그리고, 이미 1년 전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황토길 등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 또한 추가 예산 낭비임. <p>3. 그림의 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기간 소음과 진동, 분진등 모든걸 견뎌내고 계획대로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의 주민들은 지하화 된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하려면 먼 곳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p>4. 공사 안내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성북구 석관동쪽으로 입구가 설계되었으나 갑작스런 설계 변경 및 공사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직접 공사가 진행되는 이문동 주민에게는 설명이 없었고 동의도 없었음. <p>현재 주민들이 산책로에서 매일 안전을 지켜달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방문하셔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하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보 올리니 꼭 검토 진행 부탁드림.</p>
312	이문동 동부 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 -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 원제기	동부간선 지하화 월릉IC 램프-A 구간(진입 구간) 관련 민원제기의 건	<p>1. 지반 안전상의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하려는 진입구간에서 약 10~20M 떨어진곳에 약 1,500여 세대가 사는 고층 아파트 존재 - 발파 작업도 이루어 진다는데 하천옆이라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 우려됨 (싱크홀 등) - 이미 기 공사중인 신이문역 쪽 이문2동 복합청사 공사현장에서 지난 7월 싱크홀 발생으로 건물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더욱 불안함 <p>2. 초등학생 아이들의 통학로와 산책로가 없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진행하면서 동부간선 옆 산책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산책로는 약 120명의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이며 주민들의 귀중한 산책로임. - 건너편 보도는 좁은 보도에 건널목 2개, 지하터널 등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며,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좁은 도로에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발생됨. - 그리고, 이미 1년 전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황토길 등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 또한 추가 예산 낭비임.

			<p>3. 그림의 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기간 소음과 진동, 분진등 모든걸 견뎌내고 계획대로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의 주민들은 지하화 된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하려면 먼 곳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p>4. 공사 안내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성북구 석관동쪽으로 입구가 설계되었으나 갑작스런 설계 변경 및 공사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직접 공사가 진행되는 이문동 주민에게는 설명이 없었고 동의도 없었음. <p>현재 주민들이 산책로에서 매일 안전을 지켜달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방문하셔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하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보 올리니 꼭 검토 진행 부탁 드림.</p>
320	동부간선 민자도록 월릉 IC 램프 A구간 진입구간 관련	동부간선 민자도록 월릉 IC 램프 A구간 진입구간 관련의 건	<p>1. 지반 안전우려 및 싱크홀 가능성</p> <p>공사구간은 뚝방길로 지반이 불안전하면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지하에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로 인한 지반 약화 및 건물의 안전우려 가능성.</p> <p>2. 초등어린이 통학로 및 주민의 녹지 공간의 훼손</p> <p>대우1,2,현대,대성아파트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로가 훼손되어 안전한 길이 없어지며, 인근 아파트의 2000세대의 주민과 석관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체육공간이 없어짐</p> <p>3. 공공세금의 낭비</p> <p>1년전에 설치한 수억원의 황토길을 다 제거하고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공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임.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기를 제기함.</p> <p>4.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p> <p>공사 현수막을 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사 계획을 인지함.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지지않음. 다시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동의를 받고 전면재검토를 강력하게 제기함</p>
332	동부간선도로 월릉IC 진출입로 계획 철회 요망	동부간선도로 월릉IC 진출입로 계획 철회 요망의 건	<p>현재 계획중인 동부간선도로 월릉 IC진출입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 또한 없었던 부분임.</p> <p>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한 계획 철회 요청드림.</p> <p>1. 동대문구 이문동 공사 인근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회 및 동의 절차 누락. 시청에서는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했으며, 피해지역 약 1,500가구가 모르고 있을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시 주민들 대상 설명회나 의견 청취 누락</p> <p>2. 해당 지역은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 지역으로 진입로 설치 시 아이들 안전, 매연, 소음, 인접 도시와 접근성 차단 등 많은 문제 발생하며, 아파트 바로 앞 발파 공사 안정성 의문. 이에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 (이문현대아파트, 이문 대우 1차 아파트, 이문 대우 2차 아파트, 이문 대성유니드 아파트)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동의 절차 진행 바람.</p> <p>해당 지역 모든 세대원이 모르고 있었을 정도면, 홍보 및 공지</p>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임. 그런데도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정식 팀장은 주민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저희 탓으로 몰아가고 있음. 꼭 행정사무 감사 부탁드림.
334	동부간선지하화 월릉IC램프 설치 이전을 요청합니다	동부간선지하화 월릉IC램프 설치 이전 요청의 건	저희가 다니는 중랑천 산책길에 월릉ic 램프를 설치와 공사를 반대함. 이제와서 집 앞 산책길에 밑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것도 모자라 집입램프를 만든다는 것에 반대함. 현재 그길은 저희 동네 안전한 도보 산책길이며 서울석계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길임. 그리고 작년에 5억원을 들여 황토길에 이문까페를 만들고 1년 정도 사용하고 바로 다 갈아 엎는 건 세금낭비임.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 세금을 지키기 위해 월릉ic 집입램프 이전을 부탁드림.
336	동부간선도로 민자도로, 서부간선도로 민자도로 등 현재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동부간선도로 민자도로, 서부간선도로 민자도로 등 현재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해당 건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심도있는 감시의 역할을 촉구드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릉IC 건설 계획(ramp A,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람. 현재 서울시의 행정은, 수상택시 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의 민자도로도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사업들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은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부간선도로 민자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해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람.
337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램프 A구간 관련 민원제기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램프 A구간 관련 민원제기의 건	서울시정에 관련하여 민원제기 합니다. 2025년11월1일로 정해진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릉IC램프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제기 합니다. 이공사는 주민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말하는 주민 공청회는 이곳 주민이 사는 이문동에서 공청회를 진행한것이 아니고 타지역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진행한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문동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에 볼수 없으며 이문동 주민으로써 도저히 납득불가이며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 이문동에서 산지 10년동안 단 한번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에서 이곳 이문동에 램프가 들어선다는 공지를 받아본적이 없으며 공청회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곳 산책도는 주민들의 삶의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입니다.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공사입니다. 이곳 이문동 주민들은 공사구간인 산책로에서 휴식과 운동 및 산소와 같은 공간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도로화 한다는것은 이곳 이문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 버리는 만행에 가까운 처사라고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문동 주민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성북구 주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산책로는 석계초등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통학로를 대체할 만한 도로도 없습니다. 이 공사를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이곳 이문동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걸로 예상합니다. 산책로를 없애고 램프가 들어서는 공사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민생안전을 무시한 행정으로 반드시 이공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339	동부간선도로 월릉IC램프-A 위치 이전	동부간선도로 월릉IC램프 -A 위치 이전 요청의 건	<p>왕복2차도로(아파트에서 23m)떨어진 지점에 주민들의 산책로였던곳에 월릉IC램프 -A가 건설예정임. 그렇지만 이 공사는 여기 근처에사는 주민들에대해 동의도얻지않았으며 이 공사로인한 피해사항들이 정말 심각한 사안임. 공사로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산책로가 근처초등학교의 통학로였으나 이곳을 도로로 만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없어지며 반대편 위험하고 좁은도로(횡단보도증가, 연탄공장, 재활용센터가 있는 도로)로 통행해야 함. 또한 차량유입증가,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될 것임. 초등학교가 근처에있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산책로위치에 굳이 이런 큰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2. 공사위치인 산책로는 주민들의 여가,운동,휴식공간이었습니다. 나이많으신 노인분들도 슬슬 걸어다니면서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산책하던곳임. 이런 소중한 공간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사업이랍시고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3. 거주·생활 환경 악화 및 피해 (조망 저해, 차량 소음·진동·분진, 대기환경 악화) 4. 지반 침하 및 건축물 안전 우려 (깊은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5. 주민 의견 미반영 (대다수 주민이 공사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
42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신 반포역 나들 목	88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 나들목 직전에 신반포역으로 나가는 시 설물이 건설되었는데 무 슨 까닭인지 완공 후 몇 년째 개통이 안되고 있음	반포대교 나들목의 정체현상이 심각하니 본 시설물의 조속한 개 통을 요청함.
425	고투몰 불법 정황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의 원이 고투몰을 다루었으 나 후속 조치가 없었음.	임차인을 중심으로 관리법인이있는데 그곳이 불법의 중심이며 매 물 중개하는 업자가 있고 지하상가 점포에서 중개를 하고 있음. 공단도 묵인하고 있으니 감사를 요청함.
450	종로구청 미 국 대사관 앞 극우세력 불 법 천만 노상 적치물 철거 민원 거부 무 단방치 직무 유기 제보	제보자는 2025년 4월 미 국대사관 앞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신고하였으나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대 법원 판례를 이유로 방조 하였으니 시정을 요구함.	종로구청의 불법 천막 철거 미이행에 대해 해결을 요구함.
53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사업 월 릉IC 진입 시 설 설계 재검 토 필요	이 사업이 주민안전, 환 경, 경제성 측면에서 타 당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임.	첨부파일에 내용을 엄중히 다루어 주기를 요청함. 월령IC 램프A 위치 이전을 포함하여 설계 내용을 변경해 주기를 요청함.